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09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 어기구 • 박지원 • 김성환

복기왕 · 김주영 · 이개호

이병진 • 박희승 • 이정문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 · 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 · 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 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보관"을 "보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탄소발자국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확보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②
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 · 부재	
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	
한다) 및 <u>보관</u> 등에 필요한 사	<u>보</u> 관과 이에 따라 발
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하는 탄소발자국(「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탄소발자국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